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4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의원

1. 제안이유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질서 확립과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중 “구로소방서장”을 “금천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4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중 성별 균형 비율 기준 추가(안 제4조제4항 신설)
-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제1항)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8조제4호 신설)
- 수당 지급 대상 협의회 위원에 대한 범위 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4. 16. ~ 2024.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천구의회의장, 구로소방서장”을 “금천구의회 의장, 금천소방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금천 경찰서”를 “금천경찰서”로 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중 “위원은”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7조(간사) ① -----

----- 금천경찰서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

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01. 0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96호, 2017. 01. 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금천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범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회의장, 구로소방서장, 금천세무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천 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896호, 2017.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